

##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0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1. .  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### 1. 제안사유

폐기물관리법('99. 2. 8) 및 동법시행령('99. 8. 9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청결유지를 위하여 토지·건물 소유자에게 대청소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(조례 제4조제2항)
- 미 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(조례 제4조의2)
- 폐기물관리법 제16조(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)의 삭제로 관련 조례 제8조 제5항을 삭제하고, 생활폐기물 보관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

### 3. 근거법규

-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, 제7조제3항, 제15조제2항

### 4. 개정조례안 : 붙임

### 5. 신.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# 6. 참고사항

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'99. 9. 28~10.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개정조례안 전문을 구청계시판, 민원봉사실, 동사무소에 입법예고 기간동안 비치 공시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시사항 없었음

##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구민의 책무) ①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,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토지·건물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·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·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청결유지 조치명령)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대청소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명령 이행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또는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대청소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·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(안)
<p>제4조(구민의 책무)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,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, 생활 폐기물의 감량화·분리수거·자원재활용·대청소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의2(신설)</p>	<p>제4조(구민의 책무) ①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,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토지·건물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·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·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의2(청결유지 조치명령)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의 대청소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명령 이행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또는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 <p>③ 대청소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 (안)
<p>제8조(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)</p> <p>①~④ (생략)</p> <p>⑤ <u>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는 당해 지역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의 부대시설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실·유원지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자</u></li> <li>2. <u>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</u></li> <li>3. <u>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인 사업자</u></li> <li>4. <u>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</u></li> <li>5. <u>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</u></li> </ol>	<p>제8조(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)</p> <p>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·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</u></p>

# 廢棄物管理法

(法・施行令・施行規則)

1999. 8. 9

環 境 部

법	시행령	시행규칙
<p>第6條(國民의 責務) ①모든 國民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유지하고, 廢棄物의 減量化 및 資源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(2)土地·建物の 所有者·占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가 所有·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土地·建物の 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市長·郡守·區廳長이 정하는 計劃에 따라 大掃掃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삭제 &lt;'99. 2. 8&gt;</p> <p>第7條(廢棄物의 投棄禁止 등) ①누구든지 市長·郡守·區廳長이나 公園·道路 등 施設의 管理者가 廢棄物의 收集을 위하여 마련한 場所 또는 設備의 곳에 廢棄物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누구든지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埋立施設의 곳에 廢棄物을 埋立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市長·郡守·區廳長은 土地·建物の 所有者·占有者 또는 管理者가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</p>	<p>제5조 삭제 &lt;'99. 8. 6&gt;</p>	<p>하여 廢기물의 종류별도 산정한 廢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</p> <p>2. 廢기물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자가 廢기물을 직접 수집·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·운반에 소요되는 경비</p> <p>3. 기타 廢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</p>

법	시행령	시행규칙
<p>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. &lt;전문개정 '99. 2. 8&gt;</p> <p>第8條(廢棄物處理基本計劃) ①市·道知事は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指針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승인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승인 또는 變更承認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.</p> <p>②市長·郡守·區廳長은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市·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·道の 廢棄物處理基本計劃을 基礎로 하여 國家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綜合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</p>		<p>제5조(폐기물처리기본계획)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,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할구역 안의 인구, 주거형태, 산업구조 및 분포,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</li> <li>2.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</li> <li>3.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</li> <li>4.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</li> <li>6. 폐기물의 수집·운반·보관 및 그 장비·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</li> <li>7. 소요재원의 확보계획</li> </ol>



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 1999 - 172 호

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9. 9. 28

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입법예고

### 1. 개정취지

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중 생활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건물 토지소유자에게 대청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고, 환경 위해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이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 조례개정에 반영코자 함

### 2. 관련법규 :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, 제63조

### 3. 주요골자

- 청결유지를 위한 토지건물 소유, 점유 또는 관리자에게 대청소 명령과 아울러 미 이행자에게 처벌규정 신설
-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
-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소 시설기준 폐지

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1999. 10.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참조 : 환경미화과장)에게 전화·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: 직통290-0335, 교환290-3003, FAX : 290-0564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반여부와 그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### 5. 기타

개정조례(안)의 전문은 우리구 구청게시판, 민원실,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예고 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
## 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204)

### 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'99. 11. 4.

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 : '99. 11. 5.

라. 위원회 심사 : '99. 11. 13.

### 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사회산업국장 정을출)

#### 가. 제안이유

- 폐기물관리법('99. 2. 8.) 및 동법 시행령('99. 8. 9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결 유지를 위하여 토지·건물 소유자에게 대청소를 명할 수 이 있는 근거를 규정
- 미 이행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(조례 4조의 2)
- 폐기물 관리법 제16조(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)의 삭제로 관련 조례 제8조 제5항을 삭제하고, 생활폐기물 보관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

#### 다. 근거법규

-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, 제7조제3항, 제15조제2항.

### 4. 검토보고 요지

-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예 부합되게 개정되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 문제중 생활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오염문제가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확고한 환경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